



도담도담



2018년 3월(제 3호)

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수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알몸사진을 찍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에 이를 가해자에게 보내도록 한 경우에도 추행에 해당할까요?

사건 개요

가해자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이나 나체 사진, 속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모습의 사진, 가슴을 만지거나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 받음

여기서 잠깐,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대법원의 판결 내용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인정된
죄명

- ✓ 강제추행
- ✓ 협박
- ✓ 통신매체 이용 음란

